



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

[시행 2023. 1. 1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2-94호, 2022. 12. 30., 일부개정]

고용노동부(퇴직연금복지과), 044-202-7564

1.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금비율
보수총액의 1000분의 0.6(전업종 공통)

2. 행정사항

가. 시행일

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나. 재검토기한

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